

방림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1. 회부경위

가. 제안일자 및 제출자 : 2014. 10. 14(화) 평창군수(경제체육과장)

나. 회부일자 : 2014. 10. 27(월)

다. 상정일자 : 2014. 10. 27(월) 제205회 평창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상정·의결

2. 제안이유

-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제3항에 의거 평창군 방림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에 대한 평창군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3. 주요골자

가. 민간위탁 목적

- 방림농공단지의 오·폐수의 적정처리를 위하여 설치한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운영 관리함에 있어 효율적인 운영과 방류수역 수계의 수질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전문적인 기술을 갖춘 민간시설에 운영 관리를 위탁하고자 함.

나. 시설현황

- 시설위치 : 평창군 방림면 방림리 611-7번지
- 처리구역면적 : 61,593m²(방림농공단지)
- 시설용량 : 200m³/일
- 사 업 비 : 3,872백만원(국비 100%)

다. 위탁개요

- 관 련 법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 위탁업체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
- 위탁기간 : 2014. 11월 ~ 2017. 11월 (3년간)
- 위탁내용
 -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운영 관리
 - 폐수종말처리시설 유입수와 방출수의 수질관리
 - 원인자부담금 산정
- 위탁소요금액 : 연간 약180백만원

라. 관리방안의 장·단점 비교

직영관리	장점	○ 책임감 있는 운영가능
	단점	○ 평창군 조직 인력에 부담 ○ 순환보직으로 인한 전문성 결여
위탁관리	장점	○ 위탁기관의 기술과 전문 인력 확보 ○ 유지 보수 시 전문기술로 즉각적 대처 가능 ○ 상대적인 조직 인력 감축 효과
	단점	○ 위탁기간 만료로 업체 변경 시 계속성 결여
결 론	○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직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최소 2명의 인력이 필요하나, 동계올림픽 추진 등을 위하여 평창군 조직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직영은 어려움. ○ 공장폐수의 유입수와 방류수를 전문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진 업체에 위탁운영을 맡기는 것이 타당함.	

마. 향후일정

- 위탁업체 선정(공개입찰) : 10월
- 시운전업체와 공동운영 및 인수인계 : 11월
- 위탁운영 : 2014. 11 ~ 2017. 11월(3년간)

4. 검토결과

- 본 동의안은 방림농공단지의 오·폐수의 적정처리를 위하여 설치한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운영 관리함에 있어, 효율적인 운영과 방류수역 수계의 수질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민간에 위탁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의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
1. 한국환경공단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5호와 제6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 시행자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에 준하는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운영 능력을 가진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이 경우 사업자 또는 그 밖에 수질오염의 원인을 직접 야기한 자(이하 "원인자"라 한다)는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하고 규정되어 있음

- 검토대상 동의안의 위탁내용을 보면 ¹⁾폐수종말처리시설의 운영 관리, ²⁾폐수종말처리시설 유입수와 방출수의 수질관리, ³⁾원인자부담금 산정 등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운영 관리에 전체적인 업무를 위탁사무로 하고 있으며,
- 시설의 체계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법률에 근거한 민간 위탁의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되며, 위탁업체의 선정시 위탁업체의 재정건전성, 위탁운영 능력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서류상 자격만 갖추고 능력이 부족한 업체가 선정되지 않도록 능력있는 수탁기관의 선정이 필요함.

또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에서 규정한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과 관련하여, 폐수배출 원인자(수질오염의 원인을 직접 야기한 자)에 대한 비용의 부과·감면 조례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